



풍자의 경계는 어디인가

— 독일 언론평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이유진 독일 라이프치히대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학 석사

“무엇을 풍자할 수 있는가? 모든 것(Was darf die Satire? Alles).”

독일 작가였던 쿠르트 투홀스키가 1919년 남긴 이 말은 풍자의 경계를 논의할 때 자주 인용되는 문구다. 투홀스키처럼 풍자에는 금기와 한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무함마드 만평으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풍자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라는 논의는 계속 되풀이되는 주제다. 독일은 특히 나치 시대 반유대주의(Antisemitismus)를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만평이 이용되었다가 1945년 이후부터 다시 풍자의 한 장르로 기능하기 시작했다(Frank, 2013). 풍자잡지 <티타닉(Titanic)>을 선두로 정치, 종교 등 금기 없는 풍자가 이뤄지는 지금도 반유대주의는 여전히 금기로 남아있는 이유다. 독일 기본권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이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예술의 자유와 충돌하는 곳에서도 풍자의 경계가 생긴다. 본고에서는 독일 언론자율규제기구인 언론평의회(Presserat)에 접수된 만평 사례를 중심으로 독일에서 이뤄지는 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독일 언론평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만평 사례

발행일	발행 매체	풍자대상	언론평의회 심의결과
2006년 2월 1일	디 벨트(Die Welt)	무함마드	표현의 자유 인정
2010년 4월호	티타닉(Titanic)	천주교 교회	표현의 자유 인정
2012년 7월호	티타닉(Titanic)	교황 베네딕토 16세	공개경고
2017년 2월 4일	슈피겔(Spiege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표현의 자유 인정
2018년 5월 15일	쥐드도이체차이퉁 (Süddeutsche Zeitung)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표현의 자유 인정

1. 사례 1 : 무함마드 얼굴 <디 벨트> 2006년 2월 1일자 (심의번호 BK1-21/06)

[그림 1] <디 벨트> 2006년 2월 1일자 1면. 출처: www.mediawatchwatch.org.uk/page/97



가. 만평 발행 배경 및 경과

독일 일간지 <디 벨트(Die Welt)>는 2006년 2월 1일 무함마드 만평 반대 시위 성공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무함마드 만평을 1면에 발행했다. 터번을 폭탄으로 묘사한 이 그림은 2005년 9월

덴마크 일간지 <월란드 포스텐>에 발행되어 세계적으로 '만평투쟁'¹⁾을 일으킨 만평 시리즈 중 하나다. 대규모 폭력사태 및 이슬람과 유럽 간의 긴장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에 대해 <디 벨트>는 기록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만평을 복제해 발행했다. 이후 독일 언론평의회에 불만제기 100여 건이 접수됐다(Pohlmann, 2012). <타게스슈피겔>, <베를리너 차이퉁> 등 다른 독일 매체도 무함마드 만평을 실었지만 <디 벨트>는 1면 2단에 걸쳐 발행해 큰 비판을 받았다. 독자들은 만평이 무슬림 종교집단, 특히 종교 창시자를 모욕해 무슬림의 감정에 상처를 주었으며 언론윤리강령(Pressekodex) 1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언론윤리강령 10조는 '(기사의) 형태나 내용에 따라 개개 그룹의 관습적, 종교적인 감정을 실제로 훼손할 수 있는 글과 그림의 발행은 언론의 책임과 일치하지 않는 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나. 언론평의회 심의 결과

언론평의회 심의위원회는 <디 벨트>의 보도가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불만제기에 대해 '근거없음' 판단을 내렸다. 언론평의회는 심의결정문(BK1-21/06B)²⁾에서 <디 벨트>는 덴마크 신문의 만평투쟁 사건의 원인, 배경과 결과를 보도한 것으로 해당 만평은 이미 여러 매체에 발행되었다고 맥락을 설명했다. 이 만평은 '종교를 이유로 한 폭력'이라는 시대적인 주제를 만평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특정 종교집단이나 창시자, 종교인들을 모욕하거나 일반화하면서 깎아내리지 않았다고 언론평의회는 판단했다. 또한 비판의 수위가 높더라도 종교집단이나 종교인들은 그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풍자와 만평에도 경계가 있지만 그 경계는 매우 넓어야 하며 이번 사례는 경계를 넘지 않았다고 심의위원회는 판단했다(Presserat, 2006). 언론평의회는 이후 논란이 되었던 언론윤리강령 10조를 개정했다. 기존 조항에서 '종교적인 감정을 실제로 훼손할 수 있는 글과 그림'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언론은 종교적, 세계관적, 관습적인 신념을 모욕하지 않는 다'라고 간단하게 표현했다. 종교적인 감정을 훼손했는지는 독자, 즉 수용자의 판단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써 언론윤리강령 10조는 독자보다는 기자의 의도에 집중해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Pöttker, 2006).

1) <월란드 포스텐>이 2005년 9월 30일 무함마드의 얼굴을 주제로 한 12개 만평을 발행한 이후 이슬람 국가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되면서 폭력 사태가 발생, 10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무장한 세력이 EU 사무실까지 급습하면서 덴마크를 넘어 유럽권과 이슬람권 사이의 갈등으로 고조됐다. 세계적으로 종교, 언론, 예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인 '만평투쟁'은 결국 2006년 1월 30일 <월란드 포스텐> 신문사 대표가 "만평이 덴마크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많은 무슬림들을 모욕했다"고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2) 본고에 언급된 언론평의회 심의결과문은 모두 언론평의회 데이터베이스(<https://recherche.presserat.info>)에서 찾을 수 있다.

2. 사례 2 : 가톨릭 성폭행 <티타닉> 2010년 4월호 (심의번호 0181/10/2-BA)

[그림 2] <티타닉> 2010년 4월호 표지



가. 만평 발행 배경 및 경과

독일 풍자잡지 <티타닉>은 2010년 4월호 표지에 ‘오늘날 교회(Kirche heute)’라는 제목과 함께 십자가에 박힌 예수, 예수에게 성행위를 하는 성직자를 연상시키는 만평을 실었다. 가톨릭 교회 성직자들의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폭로되던 시기였다. 자극적인 묘사에 독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언론평의회에 신고된 불만 접수는 198건에 이르고, 독일 검찰에도 ‘국민선동(Volksverhetzung)’ 혐의로 총 18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Mund, 2010). 먼저 검찰 당국은 해당 만평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풍자의 특징 자체가 바로 왜곡과 과장이고 만평은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지 이 만평으로 인해 공공의 평화가 위협받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성폭행 스캔들 그 자체로 이미 공공의 평화가 위협 당했다면서 독일 사회에 충격을 준 성직자 성폭행 사건을 도리어 비판했다(“Verfahren gegen”, 2010).

나. 언론평의회 심의 결과

언론평의회도 <티타닉> 표지 만평이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불만제기에 대해 ‘근거없음’ 결정을 내렸다. 언론평의회는 심의결정문(0181/10/2-BA)에서 “만평은 교회 내부의 폐해를 꼬집어 표현한 것”이라며 “만평은 자극적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을 일깨우고 교회의 부정을 다시 생각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만평과 풍자는 사회에 토론을 이끄는 역할을 하며 풍자는 이를 부각하고 때로는 경계선까지 표현한다. 언론평의회 심의위원장 우르줄라 에언스트는 “만평은 예수나 기독교 신앙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피보호자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성직자들의 행태를 비판한다. (진실을) 덮으려 하거나 밝히는 데 충분히 기여하지 않는 교회는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란 그리스도교 같이 국가의 근간을 향한 비판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Presserat, 2010).

3. 사례 3 : 교황 베네딕토 16세 <티타닉> 2012년 7월호 (심의번호 0404/12/1)

[그림 3] <티타닉> 2012년 7월호 표지 앞뒷면



가. 만평 발행 배경 및 경과

〈티타닉〉은 2012년 7월 ‘바티리크스(Vatileaks)’라 불렸던 로마 교황청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풍자하면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사진을 이용했다. 하얀색 수단을 입고 있는 교황의 사타구니 부분에 노란색 얼룩이 묻어 있으며 ‘약한 곳이 발견됐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뒷면에는 엉덩이 부분에 갈색 얼룩이 묻은 교황의 뒷모습 사진과 함께 ‘약한 곳이 또 발견됐다!’는 문구가 적혔다. 이 표지는 노인 질병인 실금을 묘사함으로써 교황뿐만 아니라 실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까지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언론평의회에 신고된 불만제기는 182건이며, 바티칸 교황청도 즉각 반응해 독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독일 주교회의 대변인 마티아스 코프는 표지가 교황의 인격권을 침해해 불법적이며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비판했다(“Papst erwirkt”, 2012).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2012년 7월 10일 교황 측의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일시적으로 잡지 판매가 불가능해졌다. 〈티타닉〉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는데 정식 재판 하루 전에 교황청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법적 절차가 종료됐다(“Presserat rügt”, 2012).

나. 언론평의회 심의 결과

언론평의회는 이 표지가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공개경고(öffentliche Rüge)’ 결정을 내렸다. 공개경고는 자율규제기구인 언론평의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로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해당 매체를 통해 밝혀야 한다. 그간 풍자나 만평을 넉넉하게 용인해왔던 언론평의회는 심의결정문(0404/12/1)에서 “사회적인 사안에 대해 과장, 격한 언어, 아이러니 등의 도구를 이용해 말과 글로써 비판할 수 있는 풍자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교황에 대한 묘사가 존엄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언론평의회가 세부적으로 설명한 공개경고 결정 근거의 일부다.

- 소변과 대변을 묻힌 수단으로 교황은 대소변 실금증을 가진 노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는 교황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해쳤다.
- 실금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이 이 사진으로 조롱을 받았다.
- 직접적으로 교황을 타깃으로 한 선동이며 원초적인 배설 수준이다. 해당 묘사는 유익한 비판을 담고 있지 않다.
- 교황 또한 바티리크스 사건의 피해자다. 그의 개인적인 태도를 비난할 이유가 없다. 이 풍자는 사회적 폐해를 고발하는 게 아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진은 (풍자가 아니라) 명백한 비방(Schmähkritik)³⁾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풍자를 통한 논쟁이 아니라, 배변 조롱과 개인의 명예훼손을 앞세웠다.

한편 <티타닉> 편집장은 언론평의회 결정에 대해 “교황이 허락한 것보다 더 멍청하다”고 비꼬았으며 공개경고 여부도 발행하지 않았다(“Presserat rügt”, 2012).

4. 사례 4 : 트럼프와 자유의 여신상 <슈피겔> 2017년 2월 4일자 (심의번호 0073/17/2)

[그림 4] <슈피겔> 2017년 2월 4일자 (심의번호 0073/17/2)



3) 독일에서 풍자의 한계를 논의할 때 비방(Schmähkritik)이나 아니나를 구분하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모욕적인 표현을 의미한다. 특정 사안에 대한 토론을 이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풍자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으로 보며 형법에 따른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

가. 만평 발행 배경 및 경과

독일 주간잡지 〈슈피겔〉은 2017년 2월 4일 한쪽 손에는 피 흘리는 칼, 다른 손에는 자유의 여신상 목을 들고 있는 트럼프를 그린 표지를 발행했다(그림 4). 표지의 잔혹한 묘사에 대해서 독자들의 비판이 있었고, 언론평의회에 불만 접수 21건이 들어왔다. 독자들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을 학살자로 묘사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IS 테러리스트를 떠올리게 해 트럼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슈피겔〉 법률대리인은 언론평의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서 “실제라고 생각되지 않는 풍자적이고 꾸며낸 묘사로 누가 봐도 예술적인 만평임을 알아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묘사의 잔혹성에 대해서는 “표지가 어린아이들을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인쇄매체의 다큐 보도나 전쟁 지역을 다루는 방송 보도에도 나온다. 무엇이 맞는 답인지 판단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주장했다.

나. 언론평의회 심의 결과

언론평의회 심의위원회는 〈슈피겔〉 표지가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근거없음’ 결정을 내렸다. 언론평의회는 심의결정문(0073/17/2)에서 “해당 만평은 전형적인 풍자의 표현 도구를 사용했다. 황당무계하고 과장된 표현(머리가 잘린 자유의 여신상), 격한 도발적 표현(참수자로 표현된 대통령)과 같은 것이다. 이 만평은 분명 모두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풍자는 과격한 표현을 통해서 생각할 여지를 주고 정치적 토론의 단초를 제공한다. 언론평의회는 이 만평이 정치 보도의 일환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 사례 5 : 네타냐후 2018년 5월 15일자 (심의번호 0412/18/1)

[그림 5] <Süddeutsche Zeitung> 2018년 5월 15일자 p.4.



가. 만평 발행 배경 및 경과

독일 일간지 <쾨르도이체차이퉁(Süddeutsche Zeitung, SZ)>은 유로비전송콩테스트에서 이스라엘 가수가 최종우승한 직후인 2018년 5월 15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만평을 발행했다(그림 5). 가수의 결승 무대 의상을 그대로 입고 있는 네타냐후는 한쪽 손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진 미사일을 들고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고 외치고 있다. 이 만평은 특히 반유대주의(Antisemitismus)를 연상시키는 얼굴 묘사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큰 눈과 매부리코, 큰 귀의 모습은 나치 시대 반유대주의를 조장했던 잡지 <슈튀르머(Stürmer)>가 표현했던 유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그림 6). 독자들은 만평이 <슈튀르머>에서 발행됐다고 해도 믿을 만한 수준이며, 미사일에 다윗의 별을 그려서 유대인들의 종교적 감정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유대인위원회 베를린지부도 “이 만평으로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이 만평은 혐오 이미지를 조장한다.”며 신문사 측의 답변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AJC Berlin, 2018).

SZ 편집장은 바로 다음날 “만평이 반유대주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사과했고 온라인에서 만평을 삭제했다. 하지만 만평가 디터 하니취는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이스라엘 총리

의 정책을 비판하려고 했고 만평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며 사과를 거부했다(Kubeth, 2018). SZ 측은 결국 “이 만평이 반유대주의 고정관념을 이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편집국과 만평가의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없었다”면서 만평가와 결별을 선언했다(“Nach Streit”, 2018).

[그림 6] 나치의 반유대주의 잡지 <슈튀르머> 출처: Deutsches Historisches Museum, Berlin



나. 언론평의회 심의 결과

언론평의회는 이 만평이 반유대주의 경계를 넘지 않았으며 언론윤리강령 제12조 차별금지조항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문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다. 심의위원회 내에서도 이견은 있었다. 언론평의회는 심의결정문(0073/17/2)에서 “일부 심의위원들은 만평에 고정관념적인 표현이 있으며 불만접수에 근거가 있다고 비판했다. (만평이) 이스라엘 정치를 비판한다는 합당한 근거가 있지만 잘못된 이미지 상징을 이용했고, 나치 시절을 상징하는 고정관념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심의위원회 과반수가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는 범위라고 판단했다. 다윗의 별 또한 종교뿐만 아니라 국가적 상징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이스라엘 공군 등에서 실제로 쓰이는 상징이라고 언론평의회는 설명했다. 독일에서 반유대주의로 해석되는 만평에 대해 무조건적인 ‘표현의 자유’를 외치기가 쉽지는 않다. 언론평의회가 일부 심의위원들의 반대 의견도 함께 전하며 과반수를 강조한 이유다.

풍자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독일에서 풍자는 독일 기본법⁴⁾에 보장된 생각과 언론의 자유, 예술의 자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만평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는 법률가마다 해석이 다르다. 언론의 자유로 해석될 경우 청소년 보호와 개인의 명예에 관한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예술로 구분되면 더 강력하게 보호된다(Ekardt & Zager, 2007). 만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장, 왜곡, 조롱 등은 풍자의 핵심 도구이기 때문에 표현이 자극적이라고 해서 풍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풍자 묘사가 개인의 취향과 맞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풍자는 모두의 취향을 맞출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부조리한 상태를 비판하려는 의도 또한 풍자의 핵심적인 요소다. 하지만 특정한 사안과 행태에 대한 비판 기능 없이 단순히 인격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은 풍자로 보기 어렵다.

언론평의회는 독일 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킨 만평에 대해 대부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본문에 언급한 사례 중에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표지만 공개경고를 받았다. 실제 교황을 노인 질병을 가진 것으로 묘사해 사회적 비판보다는 개인의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례들은 정치적 사안과 종교인들의 부패와 같이 비판 지점이 명백했다. 잔혹하거나 성적인 표현이 있지만 피해자로 그려진 대상이 인간이 아닌 상징적인 대상(자유의 여신상, 예수)이다. 신과 같은 상징의 '명예훼손'을 제한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 신도들의 '종교적 감정 훼손'은 언론평의회뿐만 아니라 법적 논의에서도 인정된 경우가 드물다(이석민, 2019). 하지만 최근에는 무함마드 만평에서 시작된 일련의 사건으로 종교를 풍자할 경우 좀 더 섬세한 감수성이 요구되고 있다. '아래로(nach unten)' 향하는 풍자 논쟁도 마찬가지다. 풍자는 상위 계층, 권력층을 대상으로 해야지 사회적 약자를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투홀스키가 완전한 풍자의 자유를 주장했던 100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다문화, 다면화, 다층화된 사회이며 개개인의 인권 감수성과 권리의식도 높아졌다. 모든 것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시대다. 🌐

4) Artikel 5 Absatz 1-3 GG.

참고 문헌

1) 언론평의회 심의결정문

- 사례1: Presserat. (2006). Mohammed-Karikaturen zulässig. (Aktenzeichen: BK1-21/06, BK1-24/06, BK1-26/06, BK1-27/06)
- 사례2: Presserat (2010) Satire kann an Grenzen gehen. (Aktenzeichen: 0181/10/2-BA)
- 사례3: Presserat (2012) Beschwerdeflut- und die Zeitschrift schweigt. (Aktenzeichen: 0404/12/1)
- 사례4: Presserat (2017) Viele Beschwerden zu einer Trump-Karikatur. (Aktenzeichen: 0073/17/2)
- 사례5: Presserat (2018) Karikatur sorgt für "Verwerfungen". (Aktenzeichen: 0412/18/1)
- 2) 이석민 (2019) 풍자에 대한 헌법적 보호. <법학논고>, vol, no 65, pp26
- 3) Abbate, S. (2015.10) Darf Satire wirklich alles?. <JÄDU>. URL: <http://www.goethe.de/ins/cz/prj/jug/the/hum/de14866902.htm>.
- 4) AJC Berlin (2018.5.15). URL: <https://twitter.com/AJCBerlin/status/996344730542903296>.
- 5) Baron, C. (n.d). Verstören, aufrütteln, erschüttern. <Linke Medienakademie.> URL: <https://www.linkemedienakademie.de/verstoeren-aufrueteln-erschuettern>.
- 6) Ekarth, F. & Zager, I. (2007) Der Karikaturenstreit und das Recht. <Neue Justiz>. 61, pp145-192.
- 7) Frank, A. (2013.9.20). Die unterschätzten Aufklärer. taz. URL: <https://taz.de/Karikaturen-in-Deutschland/!5058755>.
- 8) Karikaturen-Streit erreicht Deutschland (2006.2.1). Das Christliche Medienmagazin pro. URL: <https://www.pro-medienmagazin.de/medien/journalismus/2006/02/01/karikaturen-streit-erreicht-deutschland>.
- 9) Kim, T. (n.d.) Was genau ist Schmähkritik? URL: <https://www.sbs-legal.de/lexikon/schmaehkritik-definition>.
- 10) Kubeth, L. (2018.5.16). „Hätte aus dem Stürmer stammen können“ - Süddeutsche Zeitung entschuldigt sich wegen antisemitischer Karikatur. Meedia.de. URL: <https://meedia.de/2018/05/16/haette-aus-dem-stuermer-stammen-koennen-sueddeutsche-zeitung-entschuldigt-sich-wegen-antisemitischer-karikatur>.
- 11) Mit Nachdruck (2006.2.2). Der Tagesspiegel. URL: <https://www.tagesspiegel.de/gesellschaft/medien/mit-nachdruck/680646.html>.
- 12) Mund, M. (2010.4.9). Das "Titanic"-Cover und der missbrauchte Jesus. <Die Welt>. URL: <https://www.welt.de/vermishtes/article7108740/Das-Titanic-Cover-und-der-missbrauchte-Jesus.html>.
- 13) Nach Streit um Karikatur: Süddeutsche Zeitung trennt sich von Zeichner Dieter Hanitzsch. (2018.5.18). <Meedia.de>. URL: <https://meedia.de/2018/05/18/nach-streit-um-karikatur-sueddeutsche-zeitung-trennt-sich-von-zeichner-dieter-hanitzsch>.
- 14) Papst erwirkt Bilderverbot gegen "Titanic". (2012.7.10). <Spiegel>. URL: <https://www.spiegel.de/kultur/gesellschaft/papst-benedikt-geht-gegen-titanic-vor-a-843608.html>.
- 15) Pohlmann, S. (2012.9.19). Satire ja, Schmähung nein. <Tagesspiegel>. URL: <https://www.tagesspiegel.de/gesellschaft/medien/presserat-satire-ja-schmaehung-nein/7149954.html>.
- 16) Pöttker, H. (2006.11.22). Herr Köhler, helfen Sie! <Der Medien Monitor>. URL: <https://web.archive.org/web/2012110051044/http://www.medien-monitor.com/Herr-Koehler-helfen-Sie.284.0.html>.
- 17) Presserat (2006.3.2). Abdruck von Mohammed-Karikaturen verstößt nicht gegen Kodex. URL: <https://www.presserat.de/presse-nachrichten-details/abdruck-von-mohammed-karikaturen-verstoebt-nicht-gegen-kodex.html>.
- 18) Presserat (2010.5.28). TITANIC-Karikatur: Kirche muss sich satirischer Kritik stellen. URL: <https://www.presserat.de/presse-nachrichten-details/titanic-karikatur-kirche-muss-sich-satirischer-kritik-stellen.html>.
- 19) Presserat rügt "Titanic". (2012.9.27). <Frankfurter Rundschau>. URL: <https://www.fr.de/kultur/presserat-ruegt-titanic-11318544.html>.
- 20) Tucholsky, K. (1919.1.27). Was darf die Satire? - Essay in der Abendausgabe des Berliner Tageblatt und Handels-Zeitung (Jg. 48, Nr. 36, S. 2). <Staatsbibliothek zu Berlin - Preußischer Kulturbesitz>. URL: <https://www.slub-dresden.de/ueber-uns/buchmuseum/ausstellungen-fuehrungen/archiv-der-ausstellungen/ausstellungen-2020/schmaehung-provokation-stigma-medien-und-formen-der-herabsetzung/kunst-provokation/was-darf-die-satire>.
- 21) Verfahren gegen "Titanic"-Cover abgelehnt. (2010.4.23). <Die Welt>. URL: <https://www.welt.de/vermishtes/article7304597/Verfahren-gegen-Titanic-Cover-abgelehnt.html>.
- 22) Weigelt, N. (2015.1.9). Satire darf alles, aber nicht alles ist Satire. <Stuttgarter Nachrichten>. URL: <https://www.stuttgarter-nachrichten.de/inhalt.meinungsfreiheit-satire-darf-alles-aber-nicht-alles-ist-satire.d64dd9a1-d719-4a6c-98db-f577e08ab16.html>.
- 23) Zeitung entschuldigt sich für Mohammed-Karikaturen (2006.1.30). <FAZ.NET>. URL: <https://www.faz.net/aktuell/politik/ausland/skandinavien-und-der-islam-zeitung-entschuldigt-sich-fuer-mohammed-karikaturen-1305078.html>.